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제13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2021. 11. 25.(목) 10:30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제13회 정기 이사회

□ 일 시 : 2021년 11월 25일(목) 10:30

□ 장 소 : 온라인 화상회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함.

□ 재적이사 : 총 10명

□ 출석이사 : 총 9명

※ ○○○ 이사: 대면 참석

사무국장이 제13회 정기이사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정관 제32조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사회 소집권자 궐위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정관 제32조제3항에 의거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개최를 선언하고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사회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인 ○○○ 이사회에게 개최선언 및 의장을 선출해주시기를 부탁하다.

○○○ 이사가 제13회 정기이사회 개최를 선언하다.

사무국장이 제13회 정기이사회 성원을 보고하다.

○○○ 이사가 제13회 정기이사회 의장을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하다.

○○○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장학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시 평생교육국장인 ○○○ 이사를 추천하다.

○○○ 이사가 동의하다.

○○○ 이사가 재청하다.

○○○ 이사가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 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 이사를 제13회 정기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표결에 부치고,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 이사가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 의장이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사무국장이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통하여 주요 보고사항에 관하여 설명하다.

보고안건 1. 전차 이사회 회의보고

2. 재단 운영현황

3. 장학사업 추진 현황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 의장이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하다.

제227호 이사 연임에 관한 건

○○○ 의장이 제227호 이사 연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서울장학재단 이사 3명(○○○, ○○○, ○○○)의 임기가 2022년 1월 7일에 만료 예정으로 이사 임기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임 의결을 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임원 연임과 관련한 재단 정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지침에 대해 설명하다. 연임 후 임기는 2022년 1월 8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라고 부연 설명하다.

○○○ 의장이 ○○○ 이사의 연임에 대해 동의하는지 이사들에게 묻다.

○○○ 이사가 연임에 동의한다고 말하다.

○○○ 이사가 재청하다.

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 의장이 ○○○ 이사의 연임에 대해 이사들에게 의견을 묻다.

○○○ 이사가 연임에 동의한다고 말하다.

○○○ 이사가 재청하다.

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 의장이 ○○○ 이사의 연임에 대해 이사들에게 의견을 묻다.

○○○ 이사가 연임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 이사가 재청하다.

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 의장이 제227호 이사 연임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 이사, ○○○ 이사, ○○○ 이사가 연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28호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 의장이 제228호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현재 서울시의 2022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2021년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재단의 조례와 정관에 근거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함을 설명하다. 최종 확정된 2022년 사업계획은 2021년 결산과 함께 내년 2월 이사회에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2022년 사업계획은 총 16개 장학사업 추진을 통해 4,658명을 선발하여 8,760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년 대비 사업계획 주요 변경 사항은 서울희망대학장학금의 지원금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하여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진로, 취업 활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의 지원 인원 확대와 선발대상을 당초 서울희망대학장학생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서울희망SOS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세부 사업계획은 회의자료를 통해 설명하다. 또한 2022년 세입총계는 10,339,454천원으로, 세부 내역은 서울시 출연금 9,512,297천원, 기부금수입 379,000천원, 전기이월금 255,157천원, 이자소득 등 193,000천원이며, 세출총계는 10,339,454천원으로 세부 내역은 사무국 운영경비 1,070,905천원, 사업비 9,051,549천원, 예비비 및 기타 217,000천원이라고 설명하다.

○○○ 의장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8호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29호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의장이 제229호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재단 정관 제4조(사업)의 목적사업을 “장학금 지급사업”에서 “장학사업”으로 개정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의거 결산서의 용어를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를 “운영성과표”로 개정하고자 하며, 시 감사담당관 요청에 의거 직무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당연직 감사를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 의장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9호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30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

○○○ 의장이 제230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의거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시험위원 임명기준 등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의거 조기퇴직제도를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의거 채용신체검사제도를 삭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종합대책」에 의거 성비위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정을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도록 개정,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행위 방지 및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2(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의거 징계기준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회의자료를 통해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0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31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

○○○ 의장이 제231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 및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무시간·휴게시간 및 보상휴가제에 대한 기준 및 용어를 정비,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거 연가의 저축 규정을 신설하여 휴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회의자료를 통해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1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32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

○○○ 의장이 제232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20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수준」과 재단 보수규정 제7조제2항 및 「2021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통보」에 따라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직급별 기본 연봉액의 한계액표를 개정하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 임금대장 작성과 임금명세서 배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신설, 「시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정비계획(추가)」에 의거 직원 직위해제 시 보수감액 기준을 구체화하고,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기준표」 중 학비보조수당을 삭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회의자료를 통해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2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33호 재무회계규정 개정에 관한 건

○○○ 의장이 제233호 재무회계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 등에 의거 결산서의 용어를 “대차대조표” 에서 “재무상태표” 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 의장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3호 재무회계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34호 임직원행동강령 개정에 관한 건

○○○ 의장이 제234호 임직원행동강령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의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시기를 구체화하여 단순 신고 방식에서 해당 사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신고하도록 개정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으로 개정, 신고기한을 사전 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로 개정, 임직원 행동강령과 인사규정에 서로 상이한 「금품 향응수수 징계기준」을 「서울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및 「재단 인사규정 별표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회의자료를 통해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4호 임직원행동강령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의장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2021년 11월 25일